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 및 선임신고문제

1.현재선임신고 순서

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신고서제출→수첩발급신청→수수료결재(12만원)→접수완료→수첩발급

(구비서류: 경력확인서,경력신고서,해당자격증사본)

→협회에서 수첩택배발송→수첩도착 (인터넷접수완료후 수첩도착까지 15일소요되었음)

②협회에서 수첩을 발급받은 다음

→관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서제출

(구비서류 :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사본)

→시청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제출 즉시접수처리

[현재문제점]

-협회 수첩발급기간 10일이상 소요되며, 수수료비용 부담증가

-각건축물 해당되는 안전관리자(전기,소방,승강기,상수도등등)선임 신고는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간편한데 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방법은 불편하다

*** 건물 등급에 따른 자격,경력확인을 시.구청에서 간단히 확인할수 일임에도

불구하고 건당 12 만원을 받도록 특혜를 준것은 협회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토부 협의한 담당자들 조사가 필요 할수있으며,

수많은 업종의 해당자격증을 갖고 선임신고를 하는데 이런경우는 전무,후무할것이다

협회에 등록된 유지관리자등록인원은 약 62.000 명(2024 년 4 월현재임시~특급)

수첩발급 62.000 명* 건당 12 만원=74 억 4 천만원

경력관리비(연회비)62.000 명*50,000 원=년간 31 억

시.구청에서 경력확인(재직증명, 졸업증명, 해당자격증)만 간단히 하면 선임신고가

되는것을 전국에 소상공인들은 대략 100 억이라는 엄청난 큰돈을 협회에 지불하도록

합의한 국토부 담당자와 협회 경력관리위원회 위원들의 감사또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처해야 할것으로 본다

* 시.구청 건축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담당자가 선임신고시 경력확인서와

해당자격증만 확인하면 될사항을 협회에 위탁하도록 결정한 근거자료

가 있는지? 어떤청탁에 의하여 또는 지시에의거 진행되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 경력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이유

시.구청 건축과에는 건축물허가부터 준공까지 전반업무와 도면을 비롯한 모든자료가

전상망으로 구축되어 있는중에서

-건축물관리법에 해당되는업무전반자료(건물통계, 관리계획서, 정기점검업체지정 보고서관리등등)

-기계설비법에 해당되는 기계설비유지관련업무 (관리자, 선해임신고)

유지관리대상건물통계, 성능점검대상건물관련업무 안내문발송 및 성능점검보고서관리등등)

그중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며,

선임신고시 구비서류에 경력확인서 포함하여 경력내용만 확인하면 간단한것을

경력관리업무란 명목을 붙여 협회 위탁한점은 매우불합리하다

(더욱이 수수료명목으로 건당 12 만원을 받도록 한 것은 위법한것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업무 위탁규정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기계설비법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시행령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상위법인 "기계설비법에서 규정한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수있다" 라고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에서는 "협회로만 한정 위탁한다"는 위법한것이다

(* 관계기관이라 함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관련성있는 정부기관)

위에 위법한규정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는 대한기계설비협회란 단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업무까지 불합리하게 위탁함

협회위탁업무중

- 1.유지관리교육에 관한업무
- 2.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
- 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업무

1 번 2 번 업무는 두가지 업무는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업무라는 것은 해당건물 등급에 맞는 경력확인은 해당업종 재직증명서로 확인만 하는 단순 행정업무로서

경력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이유로는

행정기관인 각시.군.구청 건축과에는 건축물허가부터 준공까지 전반업무와 도면을 비롯한 모든자료가 전상망으로 구축되어 있는중에서

-건축물관리법에 해당되는업무전반자료(건물통계, 관리계획서,정기점검업체지정, 보고서관리 등등)

-기계설비법에 해당되는 기계설비유지관련업무 (관리자,선해임신고)

유지관리대상건물통계, 기계설비성능점검대상건물관련업무 안내문발송 및 성능점검보고서관리등등

관리감독업무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항목도 전산망이 있기때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시 해당건물 등급의 가격기준,자격증,경력기준을 확인

할수 있는상태인데, 협회에 위탁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것이다

선임신고시 구비서류에 경력확인서 포함하여 경력내용만 확인하면 간단한것을

경력관리업무란 명목을 붙여 협회 위탁한점은 매우불합리하다

더욱이 협회에서 경력관리업무는 행정적으로 해당자격과 경력내용만 하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건당 수수료를 12 만원과 매년 연회비를 5 만원을 받도록 책정하여

억대에 수익이 가도록 특혜를 준사항은 부조리이며, 특혜를 주었다고 볼수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등 업무 위탁규정

상위법에서

기계설비법제 19 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및 단체(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15조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 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 17453 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0. 5. 1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선임자교육2회이상미이수시해임)
-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2.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 1111 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2. 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이 끝난 날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2. 25.>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매월 신고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제2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 5. 19.>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7.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제목개정 2020. 5. 19.]

제18조(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경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금액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

시행규칙[별표3]수수료 및 교육비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1. 2. 2.>

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

1. 수수료 및 교육비 금액

납부자	금액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없 음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천원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1) 신규교육을 받는 자	15만5천원
2) 보수교육을 받는 자	15만5천원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4만원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없 음
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2만원

2. 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기준

- 가.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의 전부
- 나. 교육 실시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 다. 교육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 라.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 마. 교육 실시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100분의 50

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발급수수료 12 만원 (경력관리비 50.000 원 + 수첩발급 70.000 원)

[관련근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75 호, 2021. 2. 2., 제정]

제 6 장 경력관리위원회

제 18 조(경력관리위원회)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 6 조에 따른 학과 인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 16 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력신고 및 관리 등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력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9 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 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 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 18 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수수료(건당12만원) 매년 연회비5만원 수납금액에

대한 근거자료는 법령·행정규칙·별표등 어느규정에도 없으며,

“위탁받은 협회 경력관리위원회와 국토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지않고 협회 경력관리위원회에서 수첩발급비12만원

경력관리비 년5만원 결정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 신설 2020. 5. 1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 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 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기계설비법시행령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선임자교육2회이상미이수시해임)
-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기계설비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소유 건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선임비용과 매년정기검사로 하여 비용이 추가 발생 하는데 ~ 법 제 1 조.목적에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한 목적은 너무 뽕뽕맞다고 볼수 있다

(기계설비 관련업종 협회등에서 해당직종분야의 종사하는관련자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로비활동등 청탁에 의거 만들어진 법령으로 볼수있다)

건축물안전관리 업무는 전기,소방,승강기,가스,상수도 등 관리하는데

기계설비관리는 현재선임된업종의 안전관리자와 관리주체에서 문제없이 관리되고 상황에 추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분야를 떼어내 관리주체에 비용증가 부담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선임수수료 건당 12 만원, 성능점검매년 수백만원, 교육비 15 만등등 타업종에비해 굉장히 비싼금액이다)

현재 건축물에서 큰문제는 화재와 가스폭발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에대한 사고예방활동이 최우선 가장시급한문제인데 가장문제가 없는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법으로 시행토록하는 것은 잘못된점이라본다